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5년 중에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창업하였습니다. 나사장은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에도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개선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2017년에는 기존 도매업에서 취급하던 상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장은 납품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도매)에 다른 업종(제조)를 추가하여 제조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¹⁷⁾
 또한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합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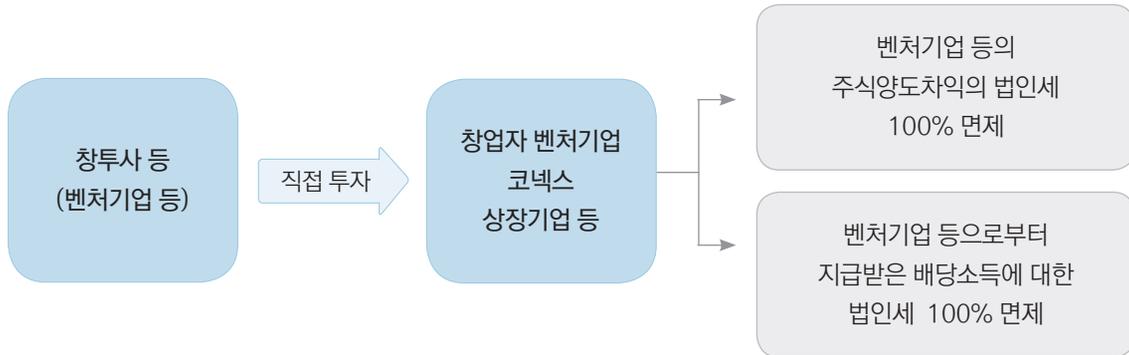
17) 서면법규-731, 2014.07.11
 18) 사전법령소득-64, 2016.06.2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3-2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 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④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상장된 후 2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상장된 후 2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상장된 후 2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의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창투자 등

3-3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을 통한 창업자 등에 출자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투자 등에 출자자

3-4

창투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⑥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⑦ 「증권거래세법」 제 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지원 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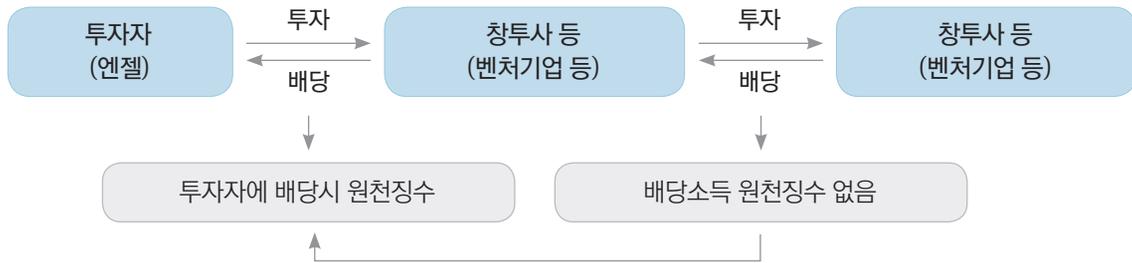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3-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③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④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 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그 조합이 소득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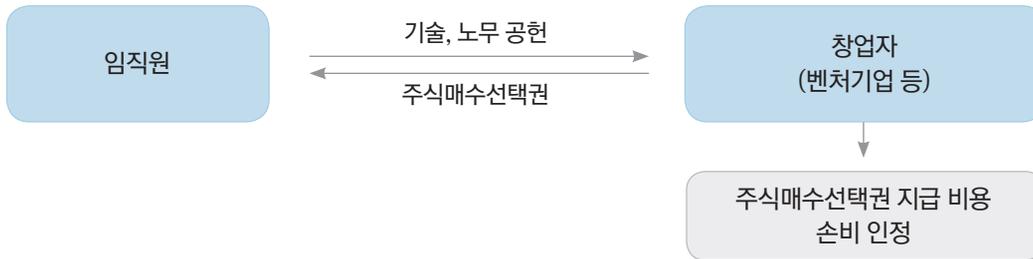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3-6

창업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등을 손비로 인정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벤처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제340조의 2)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창업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손비 인정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③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절차 및 제출서류

- ①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
- ② 이익잉여금 처분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0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3-7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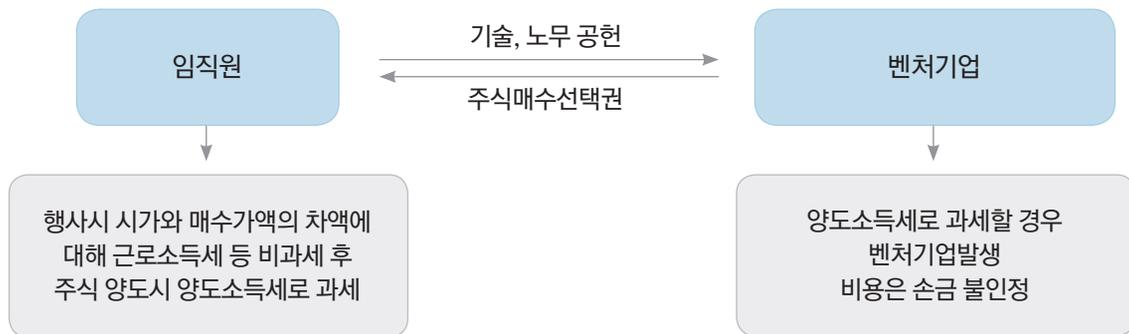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3-8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을 10%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을 10%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④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 * 단,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 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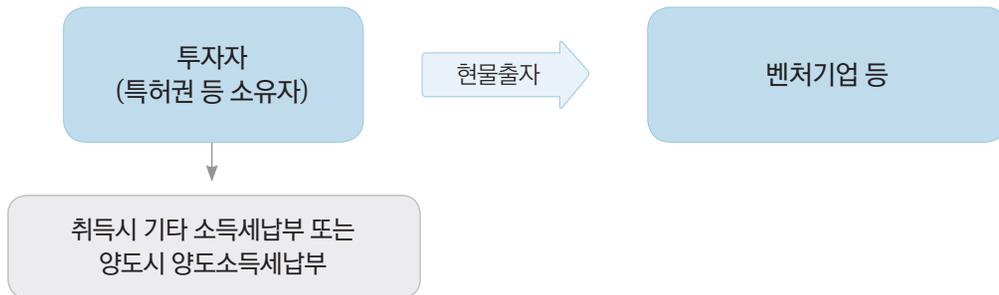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3-9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지원 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8조의 6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3-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 조합에 출자한 경우
- ④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
- 조합등록 신청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이상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 단,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 또는 지위의 양도 금지
-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지원 내용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관련 법령

-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절차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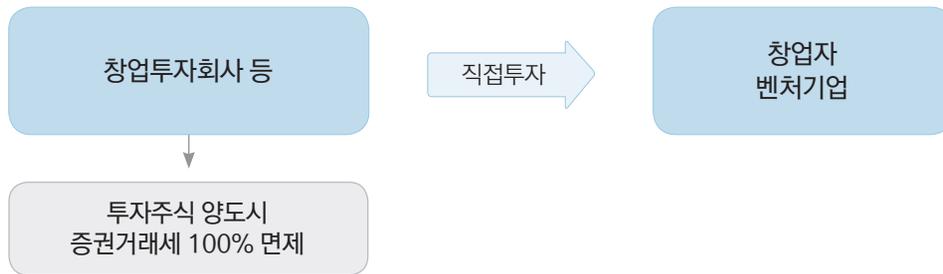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증권거래세 면제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3-11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시행령 제11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3-12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60세 이상 부모
(증여자)

현금 · 상장주식
(부동산 제외)

증여세특례



18세 이상 자녀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1년 내 창업해야)

5억원 공제, 5억원 초과분 10% 세율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창업자금의 사용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 ①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특정주식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시 일반증여



관련 법령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절차 및 제출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절세상사의 나사장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광고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사장은 일단 아들에게 1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30억원까지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나사장씨는 창업시 1억원과 창업 후 1년 이내에 29억원의 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30억원까지 또는 신규로 10명이상 고용한 경우 50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30억원(또는 5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님의 아들은 2.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0\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2.5\text{억원}$$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증여세 : $(30\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2.5\text{억원}$

사후관리 : 최초 증여 1억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2차 증여 29억원과 1차 증여 1억원 합계 30억원을 당초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증과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증과세율 적용 배제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 및 재산세 37.5% 경감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
-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100%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 적용배제**
 -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를 적용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180조,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3-14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지원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의 요건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 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대한 과세특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80%이상 재투자한 경우

3-15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지원 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턴 6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기업 매각의 요건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주주인 자
- (기업매각 요건) 본인 보유 주식의 30%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턴 6개월

지원 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시행규칙 제19조의4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

3-16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지원 대상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자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재기중소기업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 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6조, 시행령 제99조의6, 시행규칙 제45조의2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www.smb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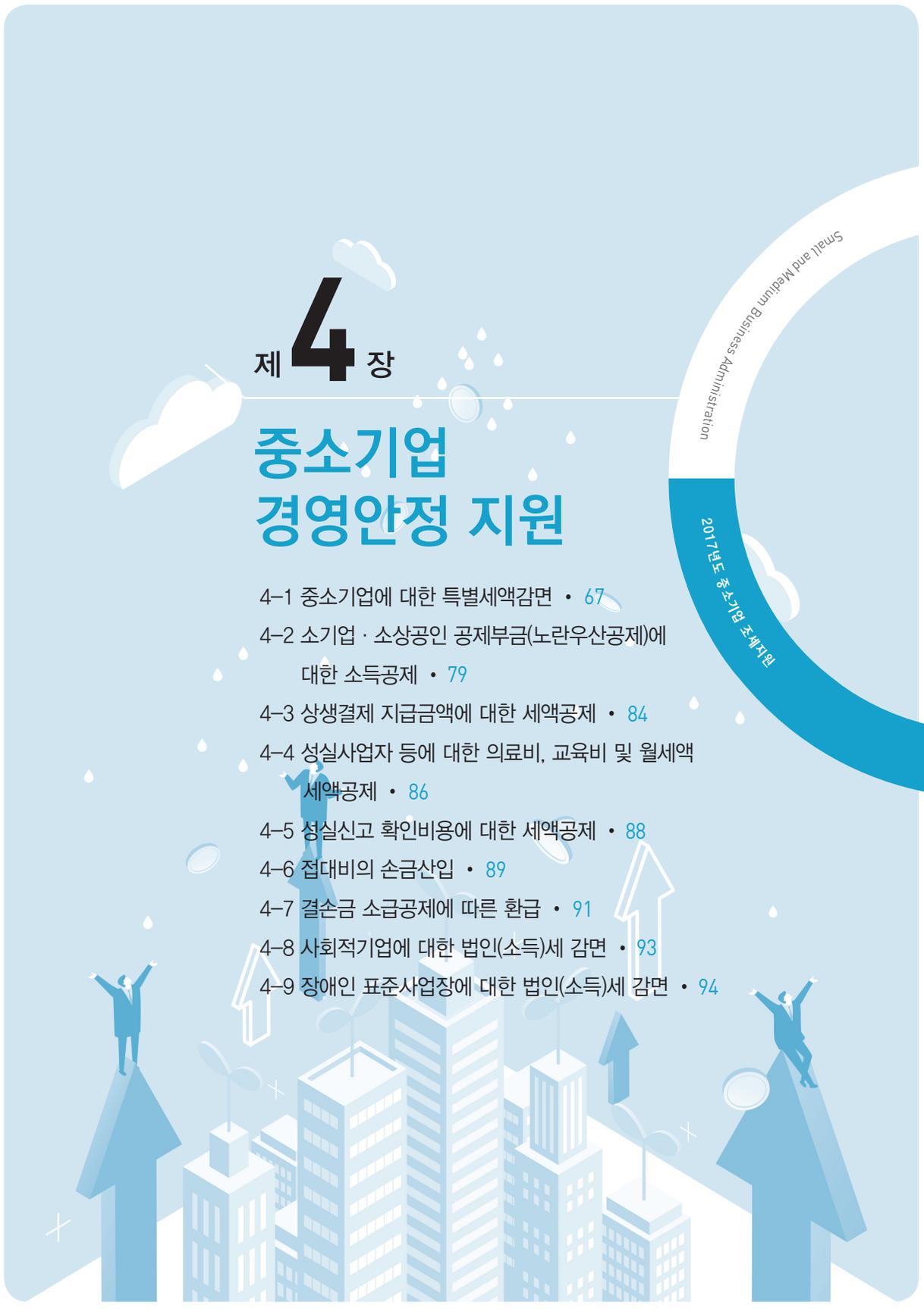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67
-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79
-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84
-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86
-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88
-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 89
-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91
-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93
-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9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경영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4-1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과 내용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④임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⑤광업		광업	B	1,000	80					
	⑥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500	80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가구 제조업	C32		120				
				식품 제조업	C10		120				
				담배 제조업	C12		80	-	20	15	3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000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반 업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음료 제조업	C11	800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⑦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00	30			
			⑧건설업	건설업		F	1,000	80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업		H	800	80			
			⑩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⑪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⑫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⑬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	20	15	30
			⑭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⑮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포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⑯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⑰직업기술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⑱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업	H	800	8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⑲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	80				
		⑳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㉑선박관리업		운수업	H	800	8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㉒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	20	15	30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관광유람선업	운수업	H	800	80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운수업	H	800	80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㉓노인복지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㉔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㉕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㉖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㉗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㉘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㉚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㉗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㉘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㉙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㉚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㉛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임대 한정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㉜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㉝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㉞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㉟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㊱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㊲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	12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도매 등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	50				
	②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 차지하고,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	10	5	10
지식 기반 산업	①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②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③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④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⑤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⑥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⑦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⑧광고업 중 광고물작성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⑨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⑩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⑪정보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⑫서적,잡지기타인쇄물 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⑬창작및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유예술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⑭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기타 내용

① 요약표

구 분		감 면 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¹⁾	수도권 ²⁾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 (기존 감면에 10% 추가 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일 것³⁾
- ③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세액감면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⁴⁾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해당없고, 최저한세 적용⁵⁾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다만, 종전규정(종업원수가 제조업 100명 미만,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1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적용 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19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

2)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

3)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의 지원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과 동일

4) “11-2 중복지원의 배제” 참조

5)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참조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질문과 답변

질문 1) 저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 B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⁶⁾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6) 조집2011서2672,2011.09.21.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6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⁷⁾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6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⁸⁾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 서면법규 -217, 2013.02.27.

8) 서면법규 -567, 2014.06.02. 서면법규 -568, 2014.06.02.

질문 4) 저희 법인은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당해 법인세 신고 시 도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부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⁹⁾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9) 재조예 -17, 2005.01.07.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인턴의 정직원 채용기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턴은 업무파악을 위해 2015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15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4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14년으로 완료되어 2015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었던 나인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알기쉬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식회사 절세는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현황(주식회사 절세 - 중소기업, 제조업/임대업, 수도권 외 소재)
 - ① 2017년 과세표준 : 제조업 1,400,000,000, 부동산임대업 200,000,000
 - ② 2017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1,400,000,000 \times 20\% = 300,000,000$
-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17년 산출세액 : 300,000,000
 - ② 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300,000,000 \times 87.5\% \times 15\% = 39,375,000$
 - ③ 2017년 납부할 세액 : $300,000,000 - 39,375,000 = 260,625,000$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소득구분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과목	합계	감면분		기타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1,600,000,000	1,400,000,000	87.5%	200,000,000	12.5%
과세표준	1,600,000,000	1,400,000,000		200,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①구분	근거법 조항	②계산명세	③감면대상 세액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감면세액 (③-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제7조	$300,000,000 \times \frac{1,400,000,000}{1,600,000,000} \times 15\%$	39,375,000	-	39,375,000
합계			39,375,000	-	39,3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⑩	과세표준금액(⑩ + ⑪)	25	1,6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⑫	세율	19	20%	7%		20%
⑫	산출세액	20	300,000,000	112,000,000		300,000,000
⑬	감면세액	21	39,375,000			39,375,000
⑭	세액공제	22				
⑮	차감세액(⑫-⑬-⑭)	23	260,625,000			260,62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액감면	소계				
	합계				
세액공제	소계				
	합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① 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39,375,000	39,375,000
	소계			39,375,000	39,375,000

① 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공제	소계		149			
	합계		150			39,375,000
공제감면세액 총계			151			39,375,00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4-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지원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¹⁰⁾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¹¹⁾
-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 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10)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11)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질문과 답변

질문 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세무사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17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¹²⁾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80억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10명	50억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30억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명	10억원 이하

● 가입제한 대상

-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②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입부금

- ①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공제사유

-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12) 단,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